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 : 평 창 군 수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136 |
|----------|-----|

제출년월일 : 2012. 4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동계올림픽추진단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른 일반직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및 정원을 재조정하고 한시기구 5급정원의 존속기한을 부칙으로 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일반직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변경(안 별표2)

- 8급 : 24%이내 → 25%이내
- 9급 : 11%이상 → 10%이상

나. 일반직 직급별 정원 조정(안 별표3)

- 5급 : 24명 → 25명(+1)
- 6급이하 : 452 → 451명(△1)

다. 한시기구 5급정원의 존속기한(안 부칙 제2조)

- 2014년 12월 31일까지

3. 참고사항

가. 관 계 법 령 : 붙임

나. 예 산 조 치 : 해당없음

다. 관 계 부 서 승 인 : 해당없음

라. 입 법 예 고 : 2012. 3.23 ~3.27 (5일간), 제출된 주민의견 없음.

마. 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 : 해당없음

바. 비 용 추 계 서 미 첨 부 사 유 서 : 별첨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와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기구 정원의 존속기한) 한시기구인 동계올림픽추진단의 정원 중 5급 정원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.

[별표 2]

평창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

1. 일반직공무원

| 구 분 | 4급 이상 | 5급 | 6급 | 7급 | 8급 | 9급 |
|-----|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비 율 | 1%이내 | 6%이내 | 27%이내 | 31%이내 | 25%이내 | 10%이상 |

비 고 : 1. 일반직과 지도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.
2. 읍·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2. 기능직공무원

| 구 분 | 6급 | 7급 | 8급 | 9급 | 10급 |
|-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비 율 | 5%이내 | 15%이내 | 23%이내 | 33%이내 | 24%이상 |

비 고 : 읍·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3. 연구직·지도직공무원

| 구 분 | 연구직 | | 지도직 | |
|-----|-----|------|-------|--------|
| | 연구관 | 연구사 | 지도관 | 지도사 |
| 비 율 | - | 100% | 5% 이내 | 95% 이내 |

비 고 : 읍·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4. 별정직공무원

| 구 분 | 4급상당 이 상 | 5급상당 | 6급상당 | 7급상당 | 8급상당 | 9급상당 |
|-----|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비 율 | | | 100% | | | |

비 고 : 1.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.
2. 읍·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[별표 3]

평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

| 기관별 직급별 | 총 계 | 본 청 | 의회사무과 | 직속기관 | 사업소 | 읍·면 |
|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|------|-----|-----|
| 총 계 | 583 | 583 | | | | |
| 정무직 계 | 1 | 1 | | | | |
| 군 수 | 1 | 1 | | | | |
| 일반직 계 | 480 | 480 | | | | |
| 4급 | 2 | 1 | | 1 | | |
| 4~5급 | 2 | 2 | | | | |
| 5급 | 25 | 10 | 2 | 4 | 1 | 8 |
| 6급 이하 | 451 | 451 | | | | |
| 연구직 계 | 2 | 2 | | | | |
| 연구관 | | | | | | |
| 연구사 | 2 | 2 | | | | |
| 지도직 계 | 19 | 19 | | | | |
| 지도관 | 1 | | | 1 | | |
| 지도사 | 18 | 18 | | | | |
| 별정직 계 | 1 | 1 | | | | |
| 6급상당 이하 | 1 | 1 | | | | |
| 기능직 계 | 80 | 80 | | | | |
| 기능6급 이하 | 80 | 80 | | | | |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이 조례 개정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됨.

4. 작성자

| |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작성자 | 평창군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|
| 연락처 | (033) 330 - 2210 |

관계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법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~⑥(생략)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
2.~3.(생략)
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
5. (생략)

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④~⑤ (생략)